

투자일임계약서

_____(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주)메이어스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은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 (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 운용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해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일임의 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3조에 정의된 금융투자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증권
3. 자본시장법 제5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4. 기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투자일임재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3조(투자일임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대상자산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4.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5.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6. 그 밖의 투자일임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제4조(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보고
4.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투자일임재산의 산정방법) 투자일임재산 산정은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한 금액을 그 투자일임재산액으로 본다.

제6조(투자일임 업무의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① 회사가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건전한 운용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준수
 2. 전문적인 조사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
 3. 고객의 투자목적과 위험수용 정도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축 및 위험관리
 4. 일관성 있는 투자원칙 추구
 5.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 ② 회사는 투자일임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투자일임 업무를 운영한다.
 1. 투자일임 상담 및 투자 권유
 2. 투자일임계약 체결
 3. 투자일임업무 수행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내용과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객의 투자자금 및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기 전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성향, 투자예정기간 등을 파악한 후 이에 상응하는 세심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객이 자기 재산의 투자목적,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시에 성실히 응한다.
 -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다.
 4. 투자일임보고서 제출
 5. 투자일임업무 종료 및 성과수수료 발생시 지급

제7조(이해상충의 방지 및 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재무상태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 ② 고객은 자기의 투자목적,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와 상담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운용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자신의 고유자산으로 투자일임재산과 동일한 종목을 매매하는 경우 분기 1회 투자일임보고서에 그 내역을 보고(종목명, 수량, 매매일, 주식평가액 등)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투자일임수수료)

-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 ② 회사는 [별지]에 성과보수의 산정 방식, 성과보수에 관한 조건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정한 특별한 사항(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성과보수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이 없는 한 성과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 측정 및 기타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 ④ 고객은 기본수수료를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지급하며, 성과수수료는 성과수수료 지급조건에 따라 계약만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지급한다.
- ⑤ 회사는 고객과 성과수수료를 수취하기로 별도로 정한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보수체계를 적용하며,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서에 성과보수의 산정 방식, 성과보수에 관한 조건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또한 당사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성과보수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금융투자업규정 제 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이하 '기준지표등')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그 밖에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투자일임재산과는 별도로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30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은 같은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⑦ 제5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의 사용을 위하여 미지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자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⑧ 회사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채우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연체료 유무, 금액 등 [별지]에 내용 기재)
- 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를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1. 고객이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2.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이 운용된 경우
 - 3.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 5.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⑩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고객의 운용지시) 고객은 리스크 관리 목적이나 전략상의 변화 등을 이유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계약의 해지 및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을 대면·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회사는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운용계획서 및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 ① 계약기간동안 회사는 고객에게 분기1회 이상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서면으로 직접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객이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 ② 제1항의 투자일임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현황
 -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제세금 등 운용현황
 -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손익
 -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등
 - 7.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고유자산과 거래한 실적 (시기, 실적, 잔액)
 - 8. 그 밖의 관계법령상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일임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고객에게 현금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현금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함
2. 고객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6.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7.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9.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자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10.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1.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않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 자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2.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예탁 또는 인출을 위임받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금융기관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임받는 행위
13.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단, 고객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제12조 (고객자산의 인출 등)

-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3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제13조 (운용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4조(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임원 성명과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성명	부서/직위	주요 경력	상근 여부

상기 임원은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은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의 대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비고

상기 주주는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15조(담당 투자운용인력의 선정과 변경)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운용인력 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자운용인력을 직접 선임하여 투자일임을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운용인력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객이 투자운용인력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운용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후 지체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⑧ 고객은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운용인력 재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의 2 (담당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담당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명	주요경력	전문자격 내용

당해 임직원은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제16조(계약의 유효기간)

- ① 투자일임계약의 유효기간은 [별지]에서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 ② 회사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제18조(계약, 만료, 해지시의 자산형태)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자산형태와 만료(해지 포함)하는 시점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자산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증권으로 한다. 단, 증권의 경우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한정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의 50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단순 매매 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투자일임재산의 평가) 제18조의 증권의 평가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다음 영업일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해지 시의 평가기준일은 사전에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1.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자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 의한 자산 종류별 평가방법
2.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거나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1조(투자실적의 평가)

-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투자일임재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20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②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22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
- 2.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24조(청약의 철회)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5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회사의 신의성실 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내용과 관리현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
- ③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고객이 거래하는 계좌개설 영업점에 고객의 투자자산운용 계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28조(통지의무)

- ①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지정된 투자일임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우편,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9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 체결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00 월 00 일

(고객) 상 호 : (주) 메이어스자산운용

대표이사 : 이 춘 원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 대영빌딩 10층 1005호

(회사) 상 호 :

대표이사 : (인)

주 소 :

[별지]

구 분	세 부 내 용												
계약기간													
투자일임재산													
내역	주식형 / 혼합형												
투자일임담당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명</th><th>직급</th><th>주요 경력</th></tr> </thead> <tbody> <tr> <td></td><td></td><td></td></tr> <tr> <td></td><td></td><td></td></tr> <tr> <td></td><td></td><td></td></tr> </tbody> </table>	성명	직급	주요 경력									
성명	직급	주요 경력											
당해 임직원은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정,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수수료	기본수수료 : 일임계약재산 X 00% 성과수수료 : 수익(총수익-총비용)의 00% ※ 지급시기 : 투자일임계약 만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수수료 입금 계좌 정보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증권회사 계좌 정보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고객에 대한 통지방법 및 정보	• 통지방법 : ☐ 우편 ☐ 이메일 ☐ 그밖의 방법 • 주 소 : • 이 메 일 : • 전화번호 :												
회사에 대한 통지방법 및 정보	• 통지방법 : ☐ 우편 ☐ 이메일 ☐ 그밖의 방법 • 주 소 : • 이 메 일 : • 전화번호 :												
그 밖의 사항	연체수수료와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음 고객은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고객은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6호)												